

# 건양대학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2010. 7. 20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건양대학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4-3-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양대학교에서 수행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관리에 대한 세부이행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적용대상) 건양대학교에서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과제 및 동 사업의 위탁 연구과제에 적용한다.

제3조(보안관리 책임자 및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총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연구과제 관리자(연구책임자를 포함)를 보안관리 담당자로, 산학협력단장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연구과제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

제4조(연구보안심의회)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산학협력단 내에 둔다.

② 심의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산학협력단장이 전문위원을 위촉한다.(개정 2010.7.20)

③ 심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지정한다.

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지침의 제·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에 대한 적정성 검토
3.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제5조(분류기준)①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보안과제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않은 과제

② 제1항에 의하여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 ③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I·II·III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보안업무 시행규칙」에 따라 군사I·II·III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분류절차)①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보안등급분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해당 과제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총장은 그 결과에 따른 보안등급을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 중앙행정기관(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한다.

제7조(보안등급변경) 총장(산학협력단장 또는 연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역, 변경사유 등을 사전에 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중앙행정기관(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한다.

제8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① 보안과제는 다음 각 목에 다른 보안조치 이외에 제2항에 따른 보안조치를 포함한다.
  1.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는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외국인의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해당참여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가능자료를 제한하도록 하며, 특이동향 인지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3.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연구원의 외국인 접촉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외국인접촉현황관리부를 비치·작성하여야 한다.

5. 연구원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연구원에 대한 보안점검 및 교육일지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6. 연구결과물 반출·대외제공·공개할 경우 연구결과물 통제관리부에 기록하고 연구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7.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과 관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연구책임자를 변경 할 경우에는 신규연구책임자의 보안서약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연구실 입구에 해당연구과제가 수행되는 기간동안 “관계자 외 출입금지”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0. 연구과제결과를 대외에 공개 또는 발표할 경우에는 참석자에 대한 보안서약 집행을 포함하는 보안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종료후에는 참석자에게 제공했던 각종 비밀자료를 회수하여야 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1. 연구과제에 대한 외국인의 자문을 일체 배제하고 일방적인 자료제공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일반과제는 연구기관별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 (보안관리 현황보고 자료 제출) 연구과제 수행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전문기관에 제출하기위한 보안관리 현황보고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0월 중에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①보안관리 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 할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조사하여 즉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안사고 경위를 내·외부 기관에서 조사할 경우 보안관리 책임자와 보안관리 담당자 및 과제참여자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총장은 제2항의 보안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고수습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1조(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①보안관리 책임자와 보안관리 담당자 및 과제참여자들은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연구책임자 등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규정한 심의회의 보안등급 검토를 거치지 않고 연구과제를 신청할 경우
2. 제9조에 규정한 보안관리 현황보고 자료 작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3. 제10조와 관련하여 보안관리 책임자가 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를 준수할 수 없도록 관련사항의 보고를 누락 또는 지연할 경우, 조사에 대한 비협조할 경우,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재발방지 대책을 소홀히 할 경우

#### 부 칙

①(시행일)이 지침은 2008년 10월 29일부로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지침의 시행전에 보안등급을 확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계속과제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분류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③(준용)보안과제로 분류된 산업체 연구개발과제는 이 지침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 보안등급 분류 신청서

연구책임자

○ 소속 :

○ 직명(직위) :

○ 성명 :

○ 연구과제명(신청, 수행) :

- 지원 기관 :

- 지원사업명 :

○ 연구과제 수행사항 요약(보안 등급분류에 필요한 주요 내용) :

○ 보안등급 분류 사항(제5조에 의한 보안 등급 기재)

구 분	보안과제	일반과제	비 고
연구책임자 분류			1차 분류
심의회 의결			심의 검토

20 . . . .

연구과제책임자 : (인)

건양대학교총장 귀하

[별첨 2]

## 보안서약서(참여연구원)

- 소속(대학, 학과) :
- 직명(직위·급, 학년) :
- 성명 :
- 연구과제명 :

상기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서 국가기술개발과제 수행과정상의 보안관리 지침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경우 동 과제 참여 제한 및 타 과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손해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한 기술 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유지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관련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유지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 필요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유지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가능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유지
5. 연구책임자의 승인없이 연구결과물의 반출·대외제공·공개 금지
6. 연구과제 사항은 개인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 금지
7. 외국인을 접촉할 시 현황을 신고하여 관리부에 기록 유지
8. 연구책임자의 출입제한 구역 및 주요 연구자료의 접근 제한 규정 준수

2008. . .

서약자 성명 : (인)

건양대학교총장 귀하

[별첨 3]

#### 외국인 접촉현황 관리부(참여연구원)

- 연구과제명 :
- 연구책임자 :



참여 연구원				접촉사유 및 상대자	책임자 (서명)
성명	접촉일시	장소	방법		
				-접촉사유 :  -상대자 ·국적 : ·성명 : ·연락처 :	
				-접촉사유 :  -상대자 ·국적 : ·성명 : ·연락처 :	
				-접촉사유 :  -상대자 ·국적 : ·성명 : ·연락처 :	

[별첨 4]

연구원에 대한 보안점검 및 교육실시 기록부

○ 연구과제명 :

○ 연구책임자 :

일자	점검 또는 교육 내용	장소	대상인원	비고

[별첨 5]

연구결과물 통제 관리부

○ 연구과제명 :

○ 연구책임자 :

